

3.22 공포, 9.23 시행 2016년 개정, 정보통신망법 핵심변화 ①

## 망법고시 <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> 위반 → 유출시 처벌강화

원문보기

### ① 망법고시위반 → 유출시 처벌강화

<p>징벌적 손해배상 (시행일 2016.7.25) 32조②항</p>	<p>법 위반 사실 인지시 CPO→CEO 보고 27조</p>	<p>법 위반시 방통위가 CEO, 임원 징계 69조의2</p>	<p>위반행위 관련 취득한 금품, 그 밖의 이익은 몰수 or 가액 추징 75조의2</p>
<p>법 위반시 미래부or 방통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감사가능 64조</p>			
<p>② &lt;점검→파기&gt; 강화</p>		<p>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파기 차단 (시행일 2016.7.25) 32조의3</p>	

### ③ 그 외 변화들

<p>취급위탁 규정 강화 2조</p>	<p>스마트폰앱 내 개인정보 접근통제 (시행일 2017.3.22) 22조의 2</p>	<p>개인정보 처리의 범위확대 24조의2</p>	<p>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거래금지 44조의7</p>
<p>(피싱or 파밍 등)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수집발생시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있는 시스템 구축 (2016. 9.22 이내 완료) 49조의 2, 부칙3조</p>		<p>(동의받아야 하는) 개인정보 해외이전 개념구체화 →제공(조회 포함), 처리위탁, 보관 63조 ②항</p>	
<p>정보통신망 해킹미수범도 처벌 →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 71조</p>	<p>악성프로그램 유포자 처벌강화 →7년이하 징역 or 7천만원이하 벌금 70조의2</p>	<p>용어변경 및 통일 →취급을 처리로 용어변경</p>	

## 〈고시 위반시 처벌〉

방법고시 <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>

[이전 Report 보기](#)

<p><b>기존 과징금</b></p> <p>위반행위 관련 <b>매출의 3%까지 징수</b></p> <p>73조</p> <p><a href="#">이전 Report 보기</a></p>	+	<p><b>개정 위반시 징계대상자로 CEO 명시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 <p>법 위반사실 인지시 CPO는 즉시 개선조치 시행 → CEO에게 보고</p> <p>27조</p> 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 <p>법 위반시 방통위가 CEO, 임원 징계</p> <p>69조의2</p> </td> </tr> </table> <p>2014.7월 [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]에서 개정예고 <a href="#">이전 Report 보기</a></p>	<p>법 위반사실 인지시 CPO는 즉시 개선조치 시행 → CEO에게 보고</p> <p>27조</p>	<p>법 위반시 방통위가 CEO, 임원 징계</p> <p>69조의2</p>
<p>법 위반사실 인지시 CPO는 즉시 개선조치 시행 → CEO에게 보고</p> <p>27조</p>	<p>법 위반시 방통위가 CEO, 임원 징계</p> <p>69조의2</p>			
<p><b>개정 위반시 미래부or 방통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감사가능</b> 64조</p>				

## 〈고시 위반으로 유출시 처벌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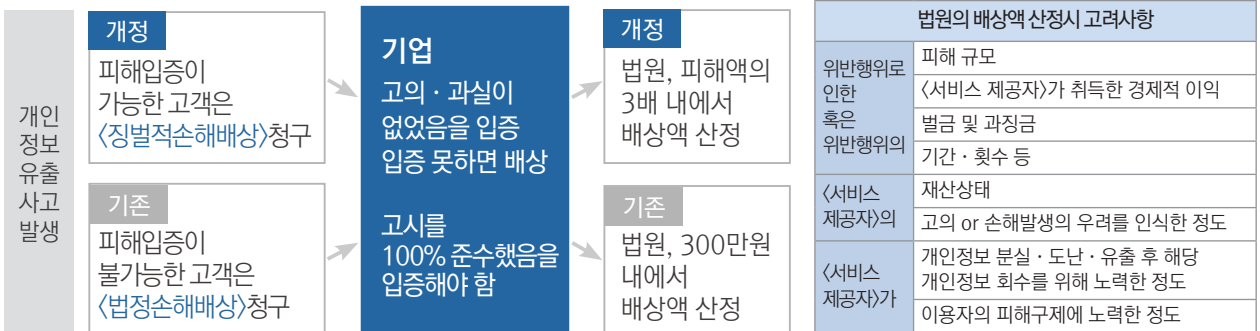
<p><b>기존 검찰고발</b></p> <p>접근통제, 접속기록위변조방지, 전송저장시암호화, 악성코드침해 방지조치를 하지않아 개인정보유출시 방통위가 검찰에 유출사업자 고발</p> <p>69조의2</p> <p><a href="#">이전 Report 보기</a></p>	<p><b>기존 형사처벌</b></p> <p>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</p> <p>64조의3 1항 6호 73조 1호</p> <p><a href="#">이전 Report 보기</a></p>	<p><b>개정</b></p> <p><b>고시 위반으로 취득한 금품, 그 밖의 이익은 몰수 or 가액 추징</b></p> <p>32조</p> <p>* 가액(價額): 물건 가치에 상당한 금액</p>
--	---	---

## 개정 고객의 피해입증이 가능한 경우 〈징벌적손해배상〉 1인당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 (2016.7.25시행)

정보통신망법 32조 ②항  
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or 훼손되어  
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  
\* 예외: 고의 or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14.7  
국무총리실 범정부TF  
[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]에서  
개정예고 [이전 Report 보기](#)

### 손해배상 청구절차는



# <상세규정 보기>

조항	개정여부	내용																						
27조	신설	④ CPO는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, 즉시 개선조치를 하고 필요시 사업주 or 대표자에게 개선조치 보고																						
32조	신설	<p>②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or 훼손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*예외: 고의 or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법원의 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위반행위로 인한 혹은 위반행위의</td> <td>피해 규모 &lt;서비스 제공자&gt;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벌금 및 과징금 기간·횟수 등</td> </tr> <tr> <td>&lt;서비스 제공자&gt;의</td> <td>재산상태 고의 or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</td> </tr> <tr> <td>&lt;서비스 제공자&gt;가</td> <td>개인정보분실·도난·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회수를 위해 노력한 정도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노력한 정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법원의 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		위반행위로 인한 혹은 위반행위의	피해 규모 <서비스 제공자>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벌금 및 과징금 기간·횟수 등	<서비스 제공자>의	재산상태 고의 or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	<서비스 제공자>가	개인정보분실·도난·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회수를 위해 노력한 정도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노력한 정도														
법원의 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행위로 인한 혹은 위반행위의	피해 규모 <서비스 제공자>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벌금 및 과징금 기간·횟수 등																							
<서비스 제공자>의	재산상태 고의 or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																							
<서비스 제공자>가	개인정보분실·도난·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회수를 위해 노력한 정도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노력한 정도																							
64조	기존	<p>① 다음 경우 미래부 or 방통위는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다</p> <p>1. 범위반사항을 발견 or 혐의를 알게 된 경우    2.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</p> <p>2의2.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·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</p>																						
	기존	<p>② 방통위는 (이 법을 위반,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조치를 하기 위하여)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·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
	개정	<p>③ 미래부 or 방통위는 &lt;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&gt;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,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, 장부 or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
69조의2	기존	<p>① 방통위는 다음 &lt;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&gt;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</p> <p>6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28조 ①항의 2~5호까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* 28조의 ①항</p> <p>2.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·운영</p> <p>3. 접속기록의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   4.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</p> <p>5.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·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</p>																						
	신설	<p>② 방통위는 이 법을 위반한 &lt;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&gt;에게 책임있는 자(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)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
75조의2	신설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조항</th> <th>내용</th> <th>처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8">71조</td> <td rowspan="4">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</td> <td>1.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</td> <td rowspan="8">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</td> </tr> <tr> <td>2. 개인의 권리/이익,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</td> </tr> <tr> <td>3.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</td> </tr> <tr> <td>4.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</td> </tr> <tr> <td>5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/침해 or 누설한 자</td> </tr> <tr> <td>6.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</td> </tr> <tr> <td>7. (이용자가 정정요구한 경우에도)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</td> </tr> <tr> <td>8.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</td> </tr> <tr> <td>72조</td> <td>2. 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)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(49조 ①)</td> <td>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73조</td> <td rowspan="3">1. (방법고시 [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] 위반으로)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/도난/누출/변조 or 훼손한 자</td> <td rowspan="3">2년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</td> </tr> <tr> <td>1의2. (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복구재생되지않는 방법으로)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</td> </tr> <tr> <td>7. 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)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조항	내용	처벌	71조	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	1.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	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	2. 개인의 권리/이익,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	3.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	4.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	5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/침해 or 누설한 자	6.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	7. (이용자가 정정요구한 경우에도)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	8.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	72조	2. 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)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(49조 ①)	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	73조	1. (방법고시 [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] 위반으로)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/도난/누출/변조 or 훼손한 자	2년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	1의2. (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복구재생되지않는 방법으로)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7. 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)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
조항	내용	처벌																						
71조	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	1.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	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																					
		2. 개인의 권리/이익,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																						
		3.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																						
		4.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																						
	5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/침해 or 누설한 자																							
	6.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																							
	7. (이용자가 정정요구한 경우에도)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																							
	8.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																							
72조	2. 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)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(49조 ①)	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																						
73조	1. (방법고시 [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] 위반으로)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/도난/누출/변조 or 훼손한 자	2년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																						
			1의2. (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복구재생되지않는 방법으로)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																				
			7. 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)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																					

## 몰수, 추징

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,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 할 수 있다.

